

# COVID-19 산업별 지침: 미용실 및 이발소

2020년 7월 29일

모든 지침은 100,000명당 증례를 포함한  
현지 역학 데이터 검토 후 카운티 보건  
담당관의 승인과 검사 양성 비율, 의료  
서비스 급증, 취약 인구, 접촉 추적, 검사를  
지원하기 위한 현지 준비에 따라서만  
시행해야 합니다.

## 개요

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 담당관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 디렉터는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대부분의 캘리포니아주 시민들에게 자택 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COVID-19가 캘리포니아주 시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완전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알려진 질병은 매우 경증(일부 사람은 증상이 없음)에서 사망에 이르는 심각한 질병까지 이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과 심장 질환이나 폐 질환, 당뇨병과 같은 중대한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비롯한 특정 집단은 입원 및 심각한 합병증을 겪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감염자에게 증상이 없거나 아직 증상이 발현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였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에 함께 있는 경우 전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중요 인프라 업계 직원들을 비롯하여 산업별 또는 직업 그룹별 COVID-19의 감염자 수와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직장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는 직원들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이를 전파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장의 예로는 병원과 장기 요양 시설, 수감 시설, 식품 제조, 창고, 육류 가공 공장, 식료품점이 있습니다.

자택체류 명령이 수정됨에 따라, 직원과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주요 예방 방침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 ✓ 호흡기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직종의 직원 및 고객/손님의 안면 가리개 사용
- ✓ 자주 손 씻기 및 정기적인 청소와 소독
- ✓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COVID-19 예방 계획 및 기타 예방 수칙 교육

또한 작업 공간에 발병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현장에서의 적절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런 사람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공공 보건 당국의 개입 및 협력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 목적

본 문서는 미용실 및 이발소에서 직원 및 고객들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용실 및 이발소의 소유주 또는 운영자는 반드시 임차인이 해당 고객들의 안전을 위한 필수 안전 조치를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시행 가능한 경우에만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본 지침은 근로자의 모든 법적 권리, 규범적 권리 및 단체 교섭으로 얻어낸 권리를 박탈하거나 무효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며, 카운티 보건 명령을 포함하지 않고 캘리포니아/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직업 안전 건강 관리청) 또는 캘리포니아 이발 및 미용 협회의 모든 기존의 안전 및 보건 관련 규제 요건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sup>1</sup> COVID-19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공중 보건 지침 및 주/현지 명령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계속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캘리포니아/OSHA는 [COVID-19 관련 웹페이지에 게시한 캘리포니아/OSHA의 직원 보호에 대한 일반 지침](#)에서 더 포괄적인 내용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사업체 및 고용주들에 대한 [지침](#) 을 통해 추가적인 요건을 제공합니다.

## 안면 가리개 필수 사용

6월 18일, 캘리포니아주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 CDPH)는 [안면 가리개 사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높은 모든 공공 및 직장 환경에서 대중 및 직원 모두가 안면 가리개를 사용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시민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직장 밖에서 업무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 대중 속에서 사람들과 직접 상호 교류하는 경우
- 대중 속의 사람들이 업무 시점에 같은 공간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중 속의 사람이 방문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음식이 준비되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포장된 공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 시설과 같은 공용 구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런 곳을 걸어서 지나가는 경우
- 모든 공간 또는 폐쇄된 구역에서 물리적인 거리를 둘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한 가족이거나 동거인 제외)이 같이 있게 되는 경우 또는,
- 승객이 있을 때 대중 교통 또는 보조교통 차량, 택시, 자가용 서비스 또는 승차 공유 차량을 운전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승객이 없을 때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모든 요건과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 사항을 비롯한 전체 세부 사항은 [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상황에서는 안면 가리개 착용을 강력히 권장하며, 고용주는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의무를 다하는 차원에서 추가적인 안면 가리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직원에게 안면 가리개를 제공하거나 직원에게 합당한 안면 가리개 구매 비용을 환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 중 하나에 부합하는 직원을 위한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으로 인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는 직원이 질환으로 인해 이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최하단 가장자리 부분에 길게 덮는 천(드레이프)이 부착된 안면 보호대와 같은 비제한적 대체품을 실행 가능한 경우, 그리고 해당 직원의 질환 상태가 이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제공해야 합니다.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는 [CDPH 안면 가리개 관련 지침](#)의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을

인지하여야 하며, 대중 속의 사람이 [지침](#)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개인이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체는 고객과 손님, 방문자, 직원 중에서 이러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업무 공간별 특정 계획

- 모든 장소마다 업무 장소별로 COVID-19 예방 계획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모든 업무 공간 및 업무에 대한 종합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하며, 각 시설마다 해당 계획을 시행할 담당자를 지정하십시오.
- [CDPH 안전 가리개 관련 지침](#)을 직장별 특정 계획에 반영하고 예외 사항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함시킵니다.
- 직원 또는 고객들에게 COVID-19 사태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보건부의 연락처를 알아 두십시오.
- 직원 및 직원 대표와 직장별 계획에 관해 교육 및 전달하고, 직원 및 직원 대표가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 해당 시설이 계획 및 문서 내용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결함이 확인된 부분은 개선하십시오.
- 모든 COVID-19 관련 질병을 조사하여 작업 관련 요소가 감염 위험에 기여했을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획을 업데이트합니다.
- [CDPH 지침](#)에 따라 직장에 감염자가 발생했을 시 필요한 절차와 프로토콜을 시행합니다.
- 감염된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6피트 이내 15분 이상 동안)한 사람을 찾아내고 COVID-19 양성 직원을 격리하고 밀접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아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OVID-19 발병을 초래하여 일시적으로 직장이 폐쇄되거나 운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 [COVID-19](#)에 대한 정보 및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 COVID-19 감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드는 기저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
- [CDC의 지침](#)을 적용하여 체온 및/또는 증상을 확인하는 등 가정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실시하십시오.
- 출근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 곤란, 피로, 근육통이나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증상 발현, 인후통, 코막힘이나 콧물, 구역질, 구토 또는 설사와 같이 [CDC가 언급한](#) COVID-19 증상이 직원에게 나타난 경우
  - 또는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며 아직 격리 해제되지 않은 경우

- 또는 지난 14일 내에, 직원이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사람과 접촉했고 잠재적으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즉, 여전히 격리 상태에 있는 경우).
-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은 직원은 증상이 처음 발현한 이후 10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지난 72시간 동안 해열제를 사용하지 않고 발열을 겪지 않은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COVID-19 감염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없는 직원은 첫 번째 COVID-19 검사 양성 판정을 받은 지 1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 흉부의 지속적인 통증 또는 압박을 포함하여 현기증 또는 창백한 입술이나 얼굴 등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 의료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업데이트 및 자세한 내용은 [CDC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초 동안 비누로 문지르는 등 비누와 물로 손을 자주 씻는 것의 중요성[또는 직원이 [CDC 지침](#)에 따라 개수대 또는 손 세정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 60%의 에탄올(권장) 또는 70%의 이소프로판올(지켜보지 않는 동안에도 아동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경우에만)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 근무 시간 및 근무 시간 외 물리적 거리두기의 중요성(아래 물리적 거리두기 항목 참조).
- 다음을 포함한 적절한 안면 가리개 사용:
  -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를 보호하지 않으며 개인 보호 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PPE)가 아닙니다.
  - 안면 가리개는 착용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물리적 거리두기와 잦은 손 씻기 필요성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 안면 가리개는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이야 합니다.
  - 직원은 얼굴 커버를 사용하거나 조절 후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안면 가리개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각 교대조 후 세척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 [안면 가리개 사용에 대한 CDPH 지침](#)에 포함된 정보로, 본 지침은 안면 가리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상황과 예외 상황을 비롯하여 안면 가리개의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채택한 모든 정책과 업무 규칙, 관행을 규정합니다. 또한 교육에는 안면 가리개 착용 예외 규정에 적용되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주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독립 계약자, 임시직 또는 계약직 직원들은 COVID-19 예방 정책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받고 필수 용품과 PPE(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임시직이나 계약직을 공급하는 조직과 사전에 이러한



책임에 대해 논의하십시오.

- 근로자가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유급 휴가 보장 혜택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재정적인 도움이 되어 자택에서 대기하는 일이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COVID-19 관련 병가 및 산재 보상금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본 페이지는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안에 의거한](#) 근로자의 병가 권리 및 주지사 [행정 명령 N-62-20에 의거하여 해당 명령이 유효한 시기 동안](#) 산재 보상 혜택 및 COVID-19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간주될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개별 통제 조치 및 선별 검사

- 교대 근무 시작 시 모든 직원 및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판매업체나 계약업체, 기타 직원에 대한 체온 점검 또는 증상 선별 검사 제공. 체온 점검/증상 선별 검사 담당자가 최대한 다른 직원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자택에서 자가 선별 검사를 해야 하며 이러한 자가 선별 검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선별 검사에 대한 적절한 대안인 경우, 직원이 출근하기 전에 해당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상기 직원 교육을 위한 주제 항목에서 설명한 대로 [CDC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아프거나 COVID-19 증상을 보이는 직원 및 고객은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권하십시오.
- 미용실 또는 이발소 운영자는 직원들에게 필요에 따라 보안경, 안면 보호대 및 보호 장갑 등 모든 필수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반드시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 미용실 또는 이발소 운영자는 일회용 장갑을 사용함으로써 자주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예: 다른 사람에게 증상이 있는지 선별 검사하는 직원 또는 손길이 자주 닿는 물품을 관리하는 직원)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될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장갑을 착용해야 하는 서비스(예: 화학 제품을 이용한 헤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장갑 착용을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손을 씻어야 하며 장갑 착용이 정기적인 손 씻기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직원은 특히 대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얼굴 가리개(마스크)뿐 아니라 안경이나 고글 또는 안면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방문 전 고객에게 연락하여 예약을 확인하고, 고객이나 그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 19 증상을 보이는지 물어봅니다. 고객이 그렇다고 답변하면 예약 스케줄을 다시 조정합니다. 고객에게 방문 동안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가져와서 사용하도록 요청합니다. 서비스에 적절한 경우, 방문 중에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에게 머리를 감고 샴푸에 오도록 요청하는 것을 고려합니다. 고객에게 아동이나 다른 사람을 데려오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고객은 도착 시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의 징후가 있음을 나타내는 고객에게는 예약 취소나 재조정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 고객을 위해 입장 조건을 나타내는 지침을 보이게 놓습니다. 지침에는 얼굴 가리개(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하며, 다른 고객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비스 제공의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지침은 출입구를 비롯한 명확하게 눈에 띄는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며, 픽토그램을 포함해야 하고, 디지털로 이용 가능하도록(예: 이메일) 해야 합니다.



## 청소 및 소독 절차

- 동료, 이웃 세입자, 부스 임차인 및/또는 직원과 조율하여 각 교대 근무 시작 및 종료 시, 그리고 고객 사이 사이에 청소를 위한 계획을 마련합니다. 리셉션 공간(입구 프론트)과 출입구 구역(계단, 계단 통로, 난간 등 포함) 같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구역을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 신용카드 단말기, 카운터, 리셉션 공간(입구 프론트) 좌석, 도어 핸들, 조명 스위치, 전화기, 변기 및 손 씻는 시설을 포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면을 자주 소독합니다.
- 신용카드 및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전자 또는 카드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정확한 액수의 현금이나 수표로 결제해야 합니다.
- 무접촉식 수도꼭지와 비누 및 종이 수건 디스펜서로 업그레이드하고 무접촉의 자동 손 소독제 디스펜서 추가를 고려합니다. 화장실에 속하지 않는 불필요한 물품들
- (예: 촛불이나 뷰티 용품 등)을 제거하고, 비누 디스펜서와 종이 수건 디스펜서가 정기적으로 채워지도록 합니다.
- **레이오넬라증** 및 기타 물 관련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시간 시설 가동 중단 후에는 모든 물 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시오**.
- 잡지, 책, 커피, 물, 셀프서비스 스테이션(무접촉인 경우 제외) 및 고객을 위한 기타 품목들을 포함한 여러 어메니티는 고객 상호작용과 손이 닿는 곳을 줄이기 위해 리셉션 구역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 리셉션 구역(입구 프론트)과 작업 장소에 손 소독제 및 살균 물티슈를 포함한 적절한 위생 제품을 비치하십시오.
- 모든 선반 및 디스플레이 케이스를 포함하여 제품 디스플레이 구역을 철저히 청소하십시오. 오염을 줄이기 위해 열어 놓은 “테스트” 제품을 제거하고 제품 테스트 제공을 중단하십시오. 이 구역에 표지판을 추가하여 고객에게 매일 청소하고 소독한다는 것을 알리십시오.
- 작업 장소는 각 고객 예약 사이 사이의 시간 등에 규칙적으로 자주 청소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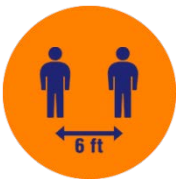


합니다. 스테이션 카운터, 롤링 카트, 서랍, 손거울, 헤어케어 및 기타 제품, 컨테이너를 철저히 세척 및 소독하고 각 고객에게 새로운 가운이나 망토를 제공합니다.

- 가위에 남은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잔해물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살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코로나 19에 대해 승인된 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닦거나 분무하는 방식으로 세척하고 소독하십시오.
-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도구의 경우, 모든 눈에 띄는 잔해물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세척하고 건조한 다음, EPA 등록 소독제에 완전히 담가서 도구를 세척하고 소독하십시오. 소독제 제조업체가 요구하는 시간 동안 도구에 분무하거나 담긴 상태로 두어야 합니다. 빗이나 브러시 같이 담가두는 물품들은 접촉 시간이 끝나면 제거하여 헝구고 종이 수건이나 깨끗이 세탁된 청결한 수건으로 닦아서 건조합니다.
- 클리퍼 같은 전동 도구의 경우, 육안으로 보이는 모든 잔해물을 제거하고, 살균, 항진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코로나 19에 대해 승인된 EPA 등록 소독제를 사용하여 닦거나 분무하여 소독하는 방식으로 청결을 유지하십시오.
- 고객에게 사용하기 전과 후에 모든 핸들, 호스, 스프레이 노즐 및 기타 장비를 세척하고 소독합니다. 의자, 머리 받침, 샴푸 보울(샴푸대) 및 기타 물품들도 각 사용 사이에 철저히 세척하고 소독해야 합니다.
- 적절한 경우, 각 고객 사이 사이에 쉽게 폐기하거나 청소할 수 있는 종이 커버, 시트 또는 깨끗한 수건 등의 사용을 고려하십시오.
- 일회용 왁스 칼라, 면봉, 목 스트립 및 도포기 같은 모든 일회용 물품은 한 번만 사용하고 즉시 버려야 합니다. 메이크업을 포함한 제품 샘플은 언제나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수건, 가운, 재사용 가능한 망토를 포함한 모든 더러워진 리넨은 밀폐된 용기에 넣고, 상업적 세탁 서비스 또는 최소 25분 동안 화씨 160도 이상의 물에 담가두는 것을 포함하는 세탁 과정에 의해 적절히 세탁될 때까지 다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리넨은 덮개가 있는 깨끗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더러워진 리넨 또는 세탁물을 취급하는 직원은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 가능한 경우, 병원균을 공기 중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바닥을 청소하지 마십시오. 가능한 한 HEPA 필터가 달린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진공청소를 하십시오.
- 직원이 교대 근무 중 청소 방침을 실천할 시간을 제공합니다. 청소 업무는 직원 직무의 일환으로 업무 시간 동안 할당되어야 합니다.
- 살균용 화학 제품을 선택할 때, 미용실이나 이발소 운영자는 [환경 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승인](#) 목록에 나와 있는 코로나 19 예방용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새로 등장한 바이러스 병원체에 효과적인 것으로 표시된 소독제나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 용액(물 1갤런당 5테이블스푼), 표면에 사용하기

적합한 최소 70% 알코올이 포함된 알코올 용액을 사용하십시오. 직원에게 화학물질 위험과 제조업체 지침, 환기 요건, 안전한 사용을 위한 Cal/OSHA 요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세척제 또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직원은 제품에 따라 장갑 및 기타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에서 권장하는 [천식에 더 안전한 세정 방법](#)을 따르고 적절하게 환기해야 합니다.

- 미용실 또는 이발소 직원은 가능하면 전화, 태블릿, 노트북, 책상, 펜, 기타 작업 용품을 공유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PPE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 휴식 공간에서 식품 및 음료용 공동 장비의 사용을 중단하십시오(공용 커피 머신 포함).
- 휴대용 고효율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고, 건물의 공기 필터를 최대한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며, 외부 공기의 유입량을 늘리고 모든 업무 공간의 환기량을 늘릴 수 있는 기타 변경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보십시오.
- 위의 세척 및 소독 방법 외에도 미용실과 이발소 및 기타 미용 사업체는 기존 [캘리포니아 이발 및 미용협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지침

- 머리 자르기와 기타 가까운 접촉 서비스를 제공할 때 외에는 직원 간 및 고객 간에 최소 6피트의 물리적 거리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리적인 가림막 또는 시각적 표시(예: 바닥 표시, 색상 테이프, 또는 직원 및/또는 고객이 서 있어야 하는 위치를 가리키는 표지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없는 리셉션(입구 프론트) 데스크 또는 기타 구역에서는 플렉시 유리(Plexiglas) 또는 기타 차단벽 등을 이용하여 직원과 고객 간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 고객 및 다른 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업무 방법 변경을 요청하는 직원의 제안을 고려하십시오(예: 재고 관리 또는 행정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원격근무로 관리).
- 리셉션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예약에 시차를 두고, 각 고객 방문 사이에 적절한 청소 및 위생 관리를 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매일의 고객 수를 줄이거나 고객 사이에 더 많은 시간을 둘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늘리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바로 방문하여 예약하는 서비스는 중단하십시오.
- 가능하면 고객이 도착할 때 직원에게 알리는 온라인 체크인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고객에게 살롱 또는 이발소에 모여 있지 말고, 밖이나 차 안에서 기다리도록 요청하십시오. 대규모 장소의 리셉션 구역에서는 한 번에 한 명의 고객만 받거나 적절한 물리적 거리 두기를 위해 의자 및 소파를 제거하는 등 공간을 변경하십시오.

- 문이 자동으로 개폐되지 않는 경우 되도록이면 문을 열어 두어야 합니다.
- 직원이 물리적 거리두기를 깨뜨리는 악수나 허그, 또는 비슷한 인사법을 피하게 하십시오.
- 직원들이 화장실과 복도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 같이 사람이 붐비는 공간에 모이는 것을 자제하게 하십시오.
- 휴게실을 폐쇄하거나 장벽을 사용하거나 테이블/의자 사이의 거리를 늘려 직원들을 분리하고 휴식 중에 모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능한 경우, 물리적 거리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차양과 좌석 배치로 실외 휴식 공간을 만듭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를 보장하기 위해 직원 회의를 조정하십시오. 되도록이면 회의 개최는 전화 또는 웹 세미나를 통해서 해주십시오.

---

<sup>1</sup> 취약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경우 추가적인 준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무용 업무 공간은 반드시 모든 [Cal/OSHA](#)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표준의 지침을 비롯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부\(CDPH\)](#)의 지침을 준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는 이러한 지침의 변경 사항에 따라 운영 방침을 변경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